소관부서 : 수도과

제정 1996 · 3 · 1 규칙 제 60호 개정 1998 · 2 · 14 규칙 제126호 개정 1998 · 10 · 19 규칙 제136호 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 개정 2001 · 3 · 7 규칙 제213호 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 개정 2003 · 2 · 17 규칙 제256호 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 개정 2008 · 7 · 25 규칙 제374호 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) 전부개정 2012 · 7 · 3 규칙 제462호 일부개정 2015 · 2 · 2 규칙 제542호 (이천시 재무회계 규칙) 일부개정 2020· 5·27 규칙 제677호 (이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) 일부개정 2021 · 6 · 16 규칙 제706호 (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) 일부개정 2025 • 11 • 7 규칙 제806호

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제46조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기업 직 영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)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제2항 및 제34조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5조제2항과「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」제21조,「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」제21조, 「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」제21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 다만, 영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이나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.

1. 기업출납워 : 공기업업무 담당과장

2. 수입원: 수입업무팀장

- 3. 지출원 : 경리업무팀장
- 4. 자산출납원 : 자산업무팀장
- 5. 일상경비출납원 : 회계업무팀장
- 6.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: 경리업무담당자
- 7. 분임자산출납원 : 각 과 주무팀장
-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·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「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사람이 대리한다.
- 제3조(관리자의 직무위임) 관리자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. 〈개정 2025·11·7〉
  - 1. 사용료·수수료 등 법령, 조례,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 금·담금·보조금의 징수결정
  - 2. 과오납금의 반환
  - 3.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,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
  - 4. 급여 등 인건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직무수행경비, 업무추진비, 공공요금,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지급
  - 5.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
  - 6. 출납, 그 밖의 회계사무
  - 7.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
- 제4조(준용규정)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「지방공기업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지방 재정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,「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,「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「이천시 물품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〈개정 2020·5·27, 2021·6·16〉

## 제2장 회계처리 기준과 장부와 전표

## 제1절 회계 기준과 절차

- 제5조(재무상태표 작성기준) 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·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,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.
  -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,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자본은 자본금·자본잉여금·이익 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.
  - ③ 자산・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.
  -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.
  -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.
  - ①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,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6조(손익계산서 작성기준)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·영업손익·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. 다만, 제조업·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따른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
  -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

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.
-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,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7조(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) ① 현금예금, 미수금, 미지급금,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적절한 환율에 관한 사항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 76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.
  -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·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,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. 다만,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기재한다.
- 제8조(외환차 손익)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 외 환차 손익으로 처리한다.
- 제9조(보조금 등의 회계처리) 국고보조금·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
  - 1.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며,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.
  - 2. 수익적 지출 및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 이익으로 계상한다.

## 제2절 회계장부

제10조(장부의 종류)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.

- 1. 「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」제22조에 따른 장부
  - 가.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"별지 제1호 서식"
  - 나. 자금수입기록부 "별지 제2호 서식"
  - 다. 자금지출기록부 "별지 제3호 서식"
  - 라. 수입예산정리부 "별지 제4호 서식"
  - 마. 지출예산통제원장 "별지 제5호 서식"
  - 바. 재고자산대장 "별지 제6호 서식"
  - 사. 유형고정자산대장 "별지 제7호 서식"
  - 아. 차입금관리대장 "별지 제8호 서식"
  - 자. 교부자금관리대장 "별지 제9호 서식"
- 2. 그 밖의 장부
  - 가.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"별지 제10호 서식"
  - 나. 유가증권 수요ㆍ공급부 "별지 제11호 서식"
  - 다.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"별지 제12호 서식"
  - 라.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
- 제11조(장부의 기록) 장부는 결의서,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장부의 오기고침)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, 그 우 측 또는 윗자리에 고침 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.
  -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, "빈칸"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.
  - ③ 장부가 앞면에 오기 되었거나 빈칸일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.
  - ④ 금액은 제1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고침 하여야 한다.
  - ⑤ 고침 부분에는 반드시 고침 글자를 날인하여야 한다.
  - ⑥ 고침 부분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.

제13조(장부의 마감요령)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- 1. 자금 수입기록부와 자금 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. 다만, 두 권 이상으로 분할 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옮겨 적어 마감한다.
- 2. 제1호에 따른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외 모든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. 다만,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이 필요 한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.
- 3.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전표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장부의 대사 및 검열)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.
  -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 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계정과목의 고침) 정리를 마친 계정 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 한 과목으로 고침 하여야 한다.

### 제3절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

- 제16조(증명서류의 범위) ① 증명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,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써 그 범위는 결의서,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.
  -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,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,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.
- 제17조(증명서류의 구비요건) 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. 다만, 원본을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.
  - 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.
- 제18조(두서금액의 표시)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괄호 안에 한글을 병기하여 쓰며, 두서금액 앞에는 "금" 끝에는 "원"을 붙여 쓴다. {예시 : 금113,560원(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)}
- 제19조(금액수량 등의 고침)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오기 등의 고침 은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. 다만,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.

- 제20조(회계문서의 날인)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, 서명, 그 밖의 표시로 대신할 수 없다. 다만, 강의·감시·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 실제 비용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.
- 제21조(준용규정)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「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」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「계산증명 규칙」에 따라 처리한다.

## 제3장 예산

## 제1절 예산의 편성

- 제22조(예산안의 작성)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예산의 수정) 관리자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추가경정예산) 관리자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예산의 이월)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·개량 및 사고 이월예산 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 요구서 "별 지 제13호 서식"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6조(계속비)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요구서 "별지 제14호 서식"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 "별지

제15호 서식"을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.

## 제2절 예산의 집행

- 제27조(예산집행계획 및 자금 수요·공급계획)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공기업업무 담당과 장으로부터 월별,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"별지 제16호 서식"을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, 해당 월의 자금 수지 실적과 향후 2개월 간의 자금 수요·공급 계획을 자금예산표 "별지 제17호 서식"으로 작성하고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.
  - ③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예산 집행계획을 근거로 세출예산배정서 "별지 제18호 서식"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초의 예산배정계획 수립 전에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배정계획 수립 전에 배정할수 있다.
  - 1. 여비
  - 2. 일상경비
  - 3. 법정경비
  - 4. 그 밖의 필수경비
- 제28조(예산의 집행품의) ① 관리자는 공기업업무 담당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.
  - 1. 1건당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
  - 2. 봉급, 수당, 전출금,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.
  - 1. 직무수행경비
  - 2. 공공요금

- 3. 제세공과금
- 4. 인건비
- 5. 여비
- 제29조(예산 수입·지출 이외의 예산사항) 재고자산 구매,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아니나,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,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- 제30조(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집행방법)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 분개 처리한다.
- 제31조(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 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 무회계상으로만 처리한다.
  - 1.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
  - 2.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
  - 3.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
  - 4. 기업내부의 자산의 이동
  - 5. 자산의 교환
  - 6.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
- 제32조(예산의 전용)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을 전용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 "별지 제19호 서식"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3조(수입금 마련지출) 관리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 하여 초과수입금 사용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추가수입예상액조서
  - 2.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
  - 3.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

제34조(예비비의 사용)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 "별지 제20호 서식"에 지출 예정액 산출명세서를 붙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3절 보고 및 통제

- 제35조(예산집행 보고)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 "별지 제21호 서식"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 납원에게 제출한다.
  -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.

# 제4장 수입 및 지출

## 제1절 수입

- 제36조(수입의 징수결정)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조정결의서(갑) "별지 제22호 서식" 또는 조정결의서(을) "별지 제23호 서식"을 작성하고, 그 명세를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,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징수결정을 착오 등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.
- 제37조(납입고지서의 발행)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 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 "별지 제24호 서식"을 송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기업출납원은 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"년 월 일 재발행" 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(추 6) - 3026 -

- 제38조(계좌대체에 따른 수납)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계좌대체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.
- 제39조(영수증의 발급)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신청하면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제40조(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)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,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.
  -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.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 "별지 제25호 서식"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.
  -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.
  -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·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 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.
- 제41조(과오납금의 반환절차)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 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 "별지 제26호 서식"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 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 "별지 제27호 서식"을 작성, 수입예산정리 부 등에 기록하고, 과오납금반환통지서 "별지 제28호 서식"을 발행하여 지급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며,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이후 전기손익 수정 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,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·정리한다.
- 제42조(징수보고서)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 입월계표를 붙임 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2절 지출

- 제43조(지출 및 지급의 원칙) ① 지출원이 수표(통상지급명령서,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발행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후에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5·2·2〉
  -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계법규 위배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44조(사업·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) ① 예산담당자는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 시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 란에 기록한다.
  -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(이하 이 절에서는 "기업출납원"이라 한다)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.
  - ③ 지출원은 채무확정 시 물품검수조서 "별지 제29호 서식" 또는 준공검사조서 "별지 제30호 서식"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 란에 기록하여야 한다.
  -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"별지 제31호 서식"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할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 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.
- 제45조(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) ① 예산담당자는 재고 회계처리를 하는 자산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 승인 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.
  - ② 예산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 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,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서 재고 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.
  -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할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 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.
- 제46조(지출결의서의 작성) ① 지출결의서(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) 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(추 6) - 3028 -

- ② 교부자금,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, 선급금,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대해서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.
- ③ 단일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
-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, 과목별,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붙임 한다.
-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,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 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채권자 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임 하여야 한다.
- 제47조(수표의 발행)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 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.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"별지 제37호 서식"을 발행한다.
- 제48조(수표의 고침 등) ① 수표의 금액은 고침하지 못한다.
  - ② 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고침할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,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고침부분의 왼쪽 여백에 고침하였다는 것과 고 침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.
  - ③ 잘못쓰이거나, 망가진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"폐지"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.
- 제49조(교부자금의 조치)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지급요구를 받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나 송금하고, 교부자금교부통지서 "별지 제39호 서식"에 따라 해당 분임 기업출납원이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 - ③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④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.
- 제50조(개산급의 정산) ① 개산급을 지급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시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.
  - 1.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한다.
  - 2. 부족금이 발생된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여비·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 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.
- 제51조(채권자의 영수인)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. 다만,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또는 분실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·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,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25·11·7〉
  -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 취급 금융기관의 송금 납입통지서를 붙임 하며, 이를 영수인에 대신한다.

[제목개정 2015·2·2]

- 제52조(지출상황 보고)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 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붙임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53조(반납금의 여입절차)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 "별지 제40호 서식"에 따라 반납고지서 "별지 제41호 서식"을 발급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년도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 수정이익이나 그 밖의 자본적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.

제54조(채무면제 등)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,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의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이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### 제3절 예수금과 유가증권

- 제55조(세입세출외 현금처리) 각종 보증금, 각종 세금 원천징수액 및 그 밖의 공기업 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.
- 제56조(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절차)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"별지 제42호 서식"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.
  -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 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 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.
  - 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 "별지 제43호 서식"에 따라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, 그 명세를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에 기록·정리한다.
- 제57조(세입세출 외 현금 및 이자 귀속)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 수 익으로 계상한다.
  - ② 세입세출 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,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.
- 제58조(유가증권 관리)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 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.
  -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관계 증명서류와 합침 하여 보관할 수 있다. 다만,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.
- 제59조(유가증권의 가액)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.

-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액으로 한다.
- 제60조(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요·공급절차)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 "별지 제42호 서식"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"별지 제43호 서식"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따른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지급하여야 한다.
  -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적고 날인하며,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61조(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)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요·공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

## 제4절 출납담당공무원

- 제62조(출납사무의 검사) ① 관리자는 회계연도 말이나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,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해당 출납담당공무원(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가입인)에게 지급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3조(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) ① 지출원, 수입원, 자산출납원,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,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며,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.
  - ② 현금이 남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

정리하여야 하며,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,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.

- 제64조(출납사무의 인계)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(전임자)는 발령 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(후임자)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- 제65조(인계의 절차) ① 제64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써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.
  -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·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붙임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"별지 제44호 서식"과 인계할 장부,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받은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인계인수 연월일과 "인계·인수를 필하였음"이라고 기입하여 인계·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·인수서에 붙임 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66조(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)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 이 인계할 수 없거나,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·인수자를 지정하여 인계·인수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- 제67조(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)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나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# 제5절 지정금융기관

- 제68조(지정금융기관의 구분)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 - 1. 출납취급금융기관 :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 보관하는 금융기관
  - 2. 수납취급금융기관 :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
  - 3. 출납대행금융기관 :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

금융기관

- 제69조(설치계약의 방법)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 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하여야 한다.
  - 1. 출납취급금융기관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.
  - 2. 수납취급금융기관 관리자, 출납취급 금융기관, 해당 금융기관이 3자계약서를 작성한다.
  - 3. 출납대행금융기관 관리자, 출납취급 금융기관, 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이나 그 밖에 사업소 등의 장,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.
- 제70조(업무시간)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.
  -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제71조(출납의 정리 구분)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, 계좌별, 수입·지출별 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.
- 제72조(인감의 상호제출)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 "별지 제45호 서식"에 따라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, 수령인,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③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- 제73조(장부의 비치) 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.
  - 1. 세입세출원장 "별지 제46호 서식"
  - 2. 세입금내역장 "별지 제48호 서식"
  - 3. 세출금내역장 "별지 제49호 서식"
  - 4.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"별지 제50호 서식"
  - 5. 유가증권 수요・공급부 "별지 제11호 서식"
  - 6. 자금운용내역장 "별지 제51호 서식"

-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수입지출원장 "별지 제47호 서식"
- 2. 세출금내역장
- 3.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
- 4. 유가증권 수요・공급부
-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 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여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 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74조(수납절차)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 의무자나 수 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지급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- 제75조(지급절차) 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나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, 대체계좌나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지급한다.
  -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지급이나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지급완료통지서 "별지 제52호 서식"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76조(수표지급의 거부)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.
  - 1.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
  - 2. 수표가 그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
  - 3.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
  - 4. 수표의 망가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
  - 5.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
  - 6.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,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. 다만,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, 금액 이외의 고침으로서 고침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77조(세출금의 여입)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지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제78조(정리사항의 고침)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, 세출과목, 소속연도, 그 밖의 고침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.
- 제79조(일계표·월계표) 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세입세출일계표 "별지 제53호 서식"과 세입세출 외 현금(유가증권)일계표 "별지 제54호 서식"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제1항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80조(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) 출납대행 금융기관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.
- 제81조(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)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.
  - 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하고,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 제5장 자산회계

## 제1절 재고자산

- 제82조(재고자산의 분류 등) 「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  - 1. 상품 :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·미착상품·적송품 등으로 하며,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·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  - 2. 제품: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등으로 한다.

- 3. 반제품 :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.
- 4. 재공품 : 제품이나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.
- 5. 원재료 : 원료·재료·매입부분품·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.
- 6. 저장품: 소모품·소모공구기구비품·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.
- 7. 그 밖의 재고자산: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.
- 제83조(재고자산의 조달·관리)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.
  -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요·공급계획에 따라야 하며, 보유자재가 부족하 거나 유휴 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.
  -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・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한 현품 카드나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  -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84조(저장품 계정)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 괄한다. 다만,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85조(재고자산 현황표)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,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
- 제86조(소요산정)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며, 2 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매할 수 없다. 다만, 특수자재나 가격 오름이 확실한 자재에 대해서는 2분기분 이상 1사업 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매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매를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구매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.
- 제87조(입고절차)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 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,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 · 관리하여야 한다.

- 제88조(출고절차)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 "별지 제55호 서식"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명세를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·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89조(발생품의 관리)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(이하 "발생품"이라 한다)을 입고 할 때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 "별지 제56호 서식"을 작성하여 자산출 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  -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 그 명세를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90조(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) ① 발생품은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며, 재용도 100분의 50 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.
  -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.
- 제91조(발생품 평가조서 작성) 발생품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 하여 기재한다.
  - 1. 1차 평가 : 공사감독자
  - 2. 2차 평가 : 공사주관과장
  - 3. 3차 평가 : 자산취급원
- 제92조(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)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 에 보관하여야 한다.
  -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한다.
  -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.
  - 1.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
  - 2. 매수자가 없을 때
  - 3.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- 제93조(재생수선)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이나 수리할 필요 가 있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  - ② 자산을 재생한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리비용을 더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.

- 제94조(재고조사) ① 기업출납원은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여 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,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한 실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재고조사표 "별지 제57호 서식"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95조(실제 조사의 입회) 기업출납원은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한다.
- 제96조(재고조사 결과의 보고) ① 기업출납원은 실제 조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이내에(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) 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붙임 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실제 조사 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붙임 하여야 한다.
- 제97조(재고의 수정) ① 재고 실제 조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조사·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명세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한다.
  ② 재고자산의 과·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 손익으로 계상한다.
- 제98조(손실 보고 및 처리) ① 자산의 잃어버림이나 훼손 사실이 있으면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바로 재고자산손실(잃어버림, 훼손) 보고서 "별지 제58호 서식"에 따라 기업 출납원에게 보고한다.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(공사현장의 감독공 무원 등)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.
  - ② 손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임 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나 통지하여야 한다.
  - 1.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
  - 2.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ㆍ성명
  - 3.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

- 4. 사고물품의 품명·규격·수량·가격(손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된 가액)
- 5.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
- 6. 평시의 관리사항
- 7. 사고발견의 동기
- 8.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
- 9. 조사확인자의 소속 · 직위 · 성명
- 10. 그 밖의 참고사항
-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라 변상 처리하여야 한다. 이경우 제63조 규정을 따른다.
-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자의 변상에 대한 비용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.
- 제99조(월말보고 등)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.

## 제2절 고정자산

- 제100조(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) 기업출납원은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.
- 제101조(건설가계정)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 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. 다만,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

가계고침산부 "별지 제59호 서식"을 비치, 기록, 정리한다.

-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에 따른 건설가계정 정산부사본 및 관계 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.
- 제102조(취득자산의 처리)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되는 모든 서류에 따라 고정자산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03조(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)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 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 여야 한다.
- 제104조(환치법에 따른 감가상각) 「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 단서규정 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〈개정 2025·11·7〉
  - 1.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
  - 2.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배수관
  - 3.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
- 제105조(고정자산의 전용) 부서,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 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전용신청서 "별지 제60호 서식"을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 부서 및 전용 요청부서에 고정자산전용지시서 "별지 제61호 서식"을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, 인수하게 한다.
- 제106조(자산의 임대) ①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.
  -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07조(발생고정자산의 관리)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 자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  - 1.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 "별지 제62호 서식"을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바로 자산출납 원에게 이관하다.

- 2.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 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.
- 3.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.
-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"별표"에 따르며,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108조(매몰고정자산의 처분)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.
  - 1.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
  - 2.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
  - 3.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
  - 4.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09조(고정자산처분 등)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.
  -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, 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,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서류를 붙임 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.
- 제110조(실제 조사 및 관리보고)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.
  -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제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제조사보고서 "별지 제63호 서식"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고정자산 실제 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.

# 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

- 제111조(경영분석)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, 경영계획·경영 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· 검토하여야 한다.
  -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, 기업의 안정성·성장성·수익성·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·검토한다.
- 제112조(경제성분석)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, 계속사업의 존폐,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 결정,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.
- 제113조(경영분석 보고서) 관리자는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 결과를 붙임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14조(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)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.
  - 1.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 「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」"별지 제11호 서식"을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.
  - 2.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,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.
  - ② 지방공기업의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재고자산의 실제 조사 차이 수정
  - 2.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
  - 3.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(선급비용, 선수수익, 미지급비용, 미수수익정리)
  - 4. 이연자산 등의 상각
  - 5.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
  - 6. 미결산 계정의 정리
  - 7.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
  - 8.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
  - 9.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

# 제7장 채권관리

- 제115조(채권의 관리책임)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이나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.
- 제116조(채권의 관리)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.
  - 1.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
  - 2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
  -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따른다.
- 제117조(대손충당금의 설정)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.
  -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,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에 따른 대손 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과거 실적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 또는 5년간의 회수실적,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
- 제118조(채권의 독촉) 관리자는 법령, 조례, 계약,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, 그 밖의 채권의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119조(채권의 관리상황 기록)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, 이행기 간의 연장,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제120조(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)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 제8장 보칙

- 제121조(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)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,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「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22조(회계서류의 보관 등) ① 회계서류의 보관·열람·보존·편철·대출 및 복사는 행정안전부의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〈개정 2025·11·7〉
  -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 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·장부와 전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 할 수 있다.
  -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·관리하는 경우와 따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전산출력자료 및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의 보관·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. 〈개정 2025·11·7〉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5·2·2 규칙 제542호,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0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7조, 제68조, 제69조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, 제43조제3항 및 제4항,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.

###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」제43조제1항 중 "채주"를 "채권자"로 하고, 제51조 제목 "(채주의 영수인)"을 "(채권자의 영수인)"으로 하며, 별지 제27호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중 "채주"를 "채권자"로 하고, 별지 제28호서식 과오납금반환통지서 중 "채주"를 "채권자"로 하며, 별지 제31호서식 지출결의서 중 "채주"를 "채권자"로 하고, 별지 제32호서식 급여지출결의서 중 "채주"를 "채권자"로 하며, 별지 제33호서식

구입(물품·기타)지출결의서 중 "채주"를 "채권자"로 하고, 별지 제34호서식 여비지출결의서 중 "채주"를 "채권자"로 하며, 별지 제35호서식 (공사·용역)집행과 지출결의서 중 "채주"를 "채권자"로 하고, 별지 제36호서식 운반지출결의서 중 "채주"를 "채권자"로 하며, 별지 제49호서식 세출금내역장 중 "채주"를 "채권자"로 하고, 별지 제52호서식 지급완료통지서 중 "채주"를 "채권자"로 한다.

부칙〈2020·5·27 규칙 제677호, 이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
②「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, 「이천시 지방 공기업 회계 규칙」제4조 및 「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7조의2 제3호 중"「이천시 재무회계 규칙」"을"「이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으로 한다.

부칙〈2021・6・16 규칙 제706호,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「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」제4조 및 「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7조의2제3호 중"「이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」"을 각각"「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으로 한다.

부칙〈2025·11·7 규칙 제806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[별표]

# 발생자산평가 기준표

우선순위 신 도	기 술 검 사	재취득가액	사용년수	상업관계
N-1	신품과 같은 상태			상품
N-2	앞으로 정상내용 년수의 5분의 3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	신품가액의 3분의 2 이상의 상태	정상내용년수의 3분의 1 미만 기간을 사용한 것	중고품
N-3	앞으로 정상내용 년수의 2분의 1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	신품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상태	정상내용년수의 2분의 1 이상 기간을 사용한 것	중고품
N-4	앞으로 정상내용 년수의 3분의 1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	신품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상태	정상내용년수의 3분의 2 이상 기간을 사용한 것	중고품
N-5	앞으로 정상내용 년수의 3분의 1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	잔존가치	정상내용년수의 2분의 1 이상 기간을 사용한 것	하 품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

계정번호	계정명칭				

일 자	적	Ŝ.	<del>-</del> 5]	변	대	ਮੀ	7	잔	ો	액	
글 사	<u>4</u>	<u>ж</u>	^r	也	네	빈	차	변	대	변	

- 1. 설정방법 :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계정과목별로 설정한다.
- 2. 총계정원장은 매월 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.
- 3.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 시 재무상태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 란에 "차 기이월"이라고 표시하고,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,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 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.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,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"집합손익"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.

### [별지 제2호 서식]

## 자 금 수 입 기 록 부

		즈서	즈서	<b>즈</b> 서	차 변 (수입액)			대	변 (수	-입내역)	)	
일자	적 요	증서 번호	현금 · 예금	수용가	기타	서수금	예수금	교부 자금	기	타		
			예금	미수금	미수금		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	자금	계정명	금 액		

- 1. 설치・유지 : 자금수입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
- 2. 기 록 방 법 : 현금예금의 수입시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지출일계표에 따라, 차변 대변을 동시에 기록한다.

### <차변>

① 수입액란 : 수입금액

<대변> 자금수입내역 - 계정과목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정

② 수용가 미수금 란 :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한 수도 사용료, 손료, 가산

금을 직접수도 사업계좌에 수입하는 경우

- ③ 기타 미수금란 : 수용가미수금 이외의 수입인 경우
- ④ 수납가계정란: 수납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 등 수입된 경우
- ⑤ 선수금란: 선수금으로 수입된 경우
- ⑥ 예수금란 : 원천징수액 또는 잡종금이 수입된 경우
- ⑦ 교부자금란 : 전도자금 등이 정산 수입된 경우
- 8 기 타 란 : 자금 수입이 2~7 이외의 수입인 경우
- 3. 마 감 : 매일 일계, 누계로 마감한다.

[별지 제3호 서식]

### 자 금 지 출 기 록 부

	증서		대 변 (지출액)						
일자	적 요	증서 번호	영 업	기 타	세스그	교부자금	기	타	현금・
		기 표 번호 영 업 기 타 예수금 교부 미지급금 미지급금	単十ぺっ	계정명	금 액	예금			

- 1. 설치·유지 : 현금, 예금의 지출사항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장부
- 2. 기 록 방 법 : 자금의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 또는 교부자금, 예수금 등의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거 차변, 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.

<차변> - 계정과목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정

영업미지급금란 :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

기타미지급금란 : 사업예산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

예수금란 : 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

교부자금란 : 사업소 등에 자금을 교부할 경우

<대변>

지출액란 : 자금지출액

3. 마 감: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한다.

(추 6) - 3050 -

### [별지 제4호 서식]

### 수 입 예 산 정 리 부

예 산 과 목									
관	항	세항	목						

											_					_	결의서	예	산	액	집	행 액		차 액
일자	적	요	번 호	당초	경정	계	조정액	수납액	잔액	(예산액- 조정액)														

1. 설치방법 : 해당 연도 수입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, 세항, 목 별로 설치한다.

### 2. 기록방법

예산액: 세입예산에서 확정된 예산

조정액: 조정결의서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.

※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 설정

예) (차변)수용가 미수금, (대변) 사용료 수익 등

수납액: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 통지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록한다.

3. 마 감: 매월 말 마감한다.

[별지 제5호 서식]

### 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

(항) (세항) (목)

				예 산 액				집 행 액				예산잔액			
일자	적	<u>\$</u>	증서 번호	당초	경정	계	집행 승인 (차)410 (대)420	지출원 인행위 (차)420 (대)430	채 무 확정액 (차)430 (대)410	지출액	가 용 예 산 잔 액	지출원 인행위 에대한 잔액	채무확 정액과 의잔액		
						(A)	(B)	(C)	(D)		(A-B)	(A-C)	(A-D)		

※ 필요시 예산액란 다음에 배정액(배정, 배정누계)란을 설정 사용가능

1. 설치방법 : 해당 연도 지출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, 세항, 목별로 설치

2. 기장방법: 예산이 성립되었을 시 해당 과목 란에 기재한다.

집행승인: 예산집행 품의에 따라 예산집행이 결정된 경우

지출원인행위액란 : 물품의 구입, 도급 등에 있어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, 인건비에

있어서는 출장명령 등 관계원인이 발생되었을 때나 채무확정시

채무확정액 : 물품의 구입 시는 검수 입고 확정되었을 때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조서

가 확정되었을 때, 인건비 그 밖의 경비는 채무가 확정되었을 경우

지 출 액 : 지출된 금액

3. 마 감: 매월 마감한다.

### [별지 제6호 서식]

### 재 고 자 산 대 장

품	명		규 격 적 요											
일	자		적	요	-		입 고	-		출 고	-		잔 고	
						수량	단가	금액	수량	단가	금액	수량	단가	금액

1. 설치방법 : 이 장부는 저장품을 품명별, 규격별로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.

2. 기록방법: 현장으로 직불된 자재라도 이 장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.

3. 마 감 : 매월 말 마감한다.

[별지 제7호 서식]

### 유형고정자산대장

( 년 월 일 기준)

단위: 워

														ī	<u>'</u> T	: 원
계 정	명			자산	명칭			취	득 원	가			자	산 번 호		
능력및	형식			취득	일자			직	노 무	비				관		
용	도			내용	년수			접	재 료	비			정 리	항		
등기	번호		Q	연간성	상각률	<u>.</u>		비	제경	刊			과 목	세항		
기계	번호		C	연간성	상각인	Ą		간	접	비			'	목		
공사	번호		거		引 え	7			계				도	면 번 호		
구조및	규격							청	부	액			정	리 번 호		
소 재	지							지급	급 재호	로비			기	타		
	l					j	 동		Ĺ	7		Ō	1			
		변동 구 분			취득	원 가		감기	· 가상각	두계9	햇	상:	 각후	처분금역	백	 처분손익
일 자	구			‡ 증;	가액	누계액	Ľ	당기성	상각액	누	계액		액 ①	2		(1-2)
															+	
															$\perp$	

### [별지 제8호 서식]

### 차입금관리대장

(앞 면)

차 입 목 적	<u>연</u> 이 자 율
차 입 승인액	상 환 조 건
차 입 승 인 일 자	차 입 일 자
차 입 선	상 환 시 작 일 자
차 입 액	지 급 보 증 방 법

## 상환계획 및 실적

(뒷 면)

	상	환 계	획		싱	한 실 길	적	잔	액
횟수	일자	이율	원금	이자	일자	원금	이자	원금	이자
1									
2									
3									
4									
5									
6									
7									

[별지 제9호 서식]

#### 교부자금관리대장

	예 산	과 목	
관	항	세항	목

		예	산		예 ረ	<u> </u>	}		자	금 운	9	
일	적	배정액	배 정 투계액	지출 원인	채무 확정	배정 잔액	채무 확정	수령액	지출액	미수령 잔 액	미지출 잔 액	자금 잔액
자	효		1	한위 ②	3	(1)-(2)	잔액 (②-③)	4	5	(1)-4)	(3-5)	(4-5)

※ 교부자금관리대장은 예산과 자금을 교부(전도)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·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결산서를 작성,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(추 6)

#### [별지 제10호 서식]

###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부

비고

#### 1. 세입세출의 현금

회계처리대상: 입찰보증금, 계약보증금, 급수공사담보금, 적금, 기금, 기여금, 청우회비, 예금, 적금, 주민세, 의료보험료 등 사업외 수입 및 지출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장부이다.

2. 지출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는 취급의뢰 금액란을 없애고, 관·항·세항·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.

[별지 제11호 서식]

### 유 가 증 권 수 요 • 공 급 부

(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용 (출납취급금융기관용

				수 량					남인자
년월일	번호	적 요	구분	권면 금액	장수	수입	지출	잔고	납입자 성 명

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.

### [별지 제12호 서식]

###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

년월일	적 요	구	입한도역	백	사용승인	구 입	액	승인잔액	확정잔액
선펄필	, A <del>v</del>	당초	경 정	계	(B)	확정액(C)	지출액	(A)-(B)	(A)-(C)

※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기한다.

[별지 제13호 서식]

## 이 월 비 요 구 서

	과	목				ス	]출액	다음	재 원	내 역	다음 연도 이월액과	
관	ોં	세항	뫄	사업명	예산액	기지 출액	금후지출 예상액	년도 이월액			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	설명

# 계 속 비 이 월 요 구 서

	과	목				연5 지출	E계속비 예산현	   황	지	출액			재	원	내	역	다음 연도 이월액과	
관	ਨ੍ਹੇ	세항	목	사업명	계속비 총 액	예 산 계상액	전년도 이월액	계	지출 필액	금 후 지 출 소요액	잔 액	다음년도 이월액					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필요액	비고

[별지 제15호 서식]

###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

	과	목					전체	계획					실 조	引 교		
				사업명	연도			재원	지줄원인  <u>-</u>	내역	연할인액과	재원	내역			
관	항	세항	목			연할인액					행위액			지출원인행 위액과의차		
						원	원	원	원	원	원	원	원	원	원	원

주 : 재원내역 란에는 기업채, 손익계정유보자금 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

(추 6)

### [별지 제16호 서식]



소 과

회계 (단위:천원)

	<u> </u>											(단기(연단)					
	예	산 과	· 목		예산액	제	1 분	1 분기 제 2 분기		제	3 분기						
관	항	세항	목	세목	게단기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
[별지 제17호 서식]

# 자 금 예 산 표

구 분	과 목 별	집 행 액	다음 달 예정	다음 다음달 예정
수 입 계				
지 출 계				
차 액				

## [별지 제18호 서식]

세출예산		배정(재배정		
세 돌 에 근		지출한도액		ᅙᄭᄭ
	(	회계	)	

년 월 일

제 호 수 신

○ ○ 과장

(단위 : 천원)

	예	산 과	목		예산액	기 배 정 액	급 회	배정액	배정	刊
관	항	세항	목	세목		2	배정액 ③	누 계 ②+③	잔 액 ①-②-③	고

[별지 제19호 서식]

# 예 산 전 용 요 구 서

년도

	과	목		داد الد	기지	예산	급 후	전용요	오구액	전용		
관	항	세항	목	예산액	출액	잔액	소요액	징	감	사유		
				Ļ	건 월	j ó	<u>]</u>					
	과장											
관리	관리자 귀하											

주 : 사유 란에는 예산 과부족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.

(추 6) - 3066 -

### [별지 제20호 서식]

##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

년도

	과 목			예산액	기지출액	예산잔액	금 후	차감부족액	
관	ਲ੍ਹੇ	(세항)	목	에건 각 (1)	(2)	에건전략 (1-2)	고 우 소요액 (3)	(예비비 지출요구액) (3-1-2)	비고
वी में		출을 필. 사유	요로						
					년	월	일		
					이천시 〇	○사업관리	1자		
이천	시장	귀하							

주 :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.

[별지 제21호 서식]

#### 교부자금현계표

사업소명(

년 월

	배 정 액 예 산 집 형						자 금 운 용				진	<u> </u>	액		
예 산			지출원인행위		채무확정액		수현	병액	지출	흩액					
고 목	금월분	금 월 까지의 누 계	금월분 (차)420 (대)430	누 계	금월분 (차) 420 410 (대)( 212	누 계	그 일	누 계	금 월 (차)211 (대)511	누 계	배정액 잔 액	채무 확정 잔액	자 금 미 수령액	자 금 미 지출액	자금 잔액

#### ※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 가능

 잔액기록 1. 배정액잔액
 = 배정액 누계 - 지출원인행위액 누계

 2. 채무확정잔액 =
 " - 채무확정액 누계

3. 자금미수령액 = " - 자금수령액 누계

4. 자금미지출액 = 채무확정액 누계 - 지출액 누계

5. 자금잔액 = 자금수령액 누계 - 자금지출액

현계표의 작성과 운용 ①이 표는 예산자금원장에 따라 매월 말 본청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서 작성한다.

②본청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액의 각 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의 해당 란을 기록한다.

## [별지 제22호 서식]

# 조 정 결 의 서 (갑)

제 호			담당자	수입원	기업출납원	관리자
	71	그지서 발부		년	월 일	
조정내역	니 년	기기한		년	월 일	
ठंठे	세항	목	조정건수	조정량	조정금액	비고

# [별지 제23호 서식]

# 조 정 결 의 서 (을)

관 리 자	0	발의	년	월 일
-1 Al Žill Al	6)	고지서발행	년	월 일
기업출납원	<b>(1)</b>	- 납입기한	년	월 일
수 입 원	0	수입예산정리부 등기(조정란)	년	월 일
담 당 자	<b>(1)</b>	고지서번호	제	<u></u> Š
	관	항	세항	목
년세입○○○ 특 별 회 계	·		, -	
	급	원(금	원)	
납입자 주소성명				
적 요				

### [별지 제24호 서식]

#### 납 입 고 지 서

※ 서식은 각 사업단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전산처리 납입고지서 또는 통상의 납입고지서 를 사용하되, 고지인 명의는 이천시 ○○○사업관리자(기업출납원)로 한다.

연수핀토지서

답입서

제호 년도 회계

(관) (항)

(목)

급원(금원)

단

위금액을 납입함.
년월일

수입원

직 · 성명

(0)

012011										
제 호	년	도 회계								
(관)	,	(항)								
(목)										
급 원(금 원)										
단										
통지함.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월	일							
기'	업출납원	[ 귀하	-							
납입자										
기 업 출납원	<b>(1)</b>	취급	자	0						
수입원	<b>(1)</b>	フ]	록	<b>(1)</b>						

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(관) (항) (목) <u>금</u> 원(금 원) 단 위 금액을 영수함.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① 수입원 귀하

[별지 제25호 서식]

# 수 입 일 계 표

				담 등	당 자	팀	장	기업출납원
세 항	목		수	입	액		Н	] 고
711 0	٦	건	수		금	핵		1 4
함	계							
출 납 취	급금융기	<u> </u>						
수 납 취	급금융기곡	<u></u>						

※ 세항·목은 각 공기업 사업단체별로 설정·운영

(추 6) - 3072 -

### [별지 제26호 서식]

# 과 오 납 금 반 환 청 구 서

	과	목		납 기	납 입	기나비에	정당요	리 O 나그	반환 가산금	반환	납입자		
관	항	세항	목	[ 현 기	년월일	기납부액	납부액	과오납금	계산일수	가산금액	주소 성명		
사유	사유												
		위	과오	납금을	반환하	여 주시기	청구함.						
							주소		년	월	일		
청구자성명													
	이천시 ○○사업관리자 귀하												
9	위 사실을 확인함												
년 월 일 기업출납원 ①													

※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

[별지 제27호 서식] 〈개정 2015·2·2〉

##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

기업출납원		발		의	년	월	일	<u>(1)</u>					
		수입예산정	리부등	-7]	년	월	일	<u>(1)</u>					
팀 장		과오납금정	]리부등	F-7]	년	월	일	<b>(1)</b>					
		반 환 통지	]서 발	행	년	월	일	<b>(1)</b>					
담 당 자		반환통지서	발행반	호	제		ই						
년도 회계 <sup>(관)</sup>		(항)		(세항)			(목)						
			1										
	급	워(=	그			워)							
	<u>금</u> 원(금 원)												
채권자													
사기 금·	액을 영수하였	년 연음	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			
			영	수자 /	성명		<b>(1)</b>						
적													
요	<u>Q</u>												

(추 6)

[별지 제28호 서식]〈개정 2015・2・2〉

## 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

원 부	과오납금반환통지	반환납금반환명령	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
제호 년도 OO기업 회계 출납원	제호 년도 OO기업 제호 회계 출납원	제호 년도 OO기업 제호 회계 출납원	제호 년도 ○○기업 회계 출납원
채권자	채권자	채권자	채권자
<u>금 원(금 원)</u>	금 원(금 원)	금 원(금 원)	금 원(금 원)
단	단	단	단
<u>년 월 일발행</u> <u>년 월 일송부</u>	상기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	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기 바람	상기금액을 채권자 에게 반환하였음 을 보고함
담당자 팀장 기업출납원	<u>년 월 일</u> 시 기업출납원 성명 ⑩ 이천시 ○○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	<u>년 월 일</u> 시 기업출납원 성명 ① 이천시 ○○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	<u>년 월 일</u> 이천시 ○○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
	귀하	권하 귀하	기념을 대한 기아
관 항 세항 목	관 항 세항 목	관 항 세항 목	관 항 세항 목

### [별지 제29호 서식]

# 물 품 검 수 조 서

품 목		재고자산대장등기
수 량		
납 품 자		
계 약 금 액	금 원(금 원)	취 급 자
계 약 체 결 년 월 일	년 월 일	
납 품 기 한	년 월 일까지	
검수 년월일	년 월 일	자산출납원
검 수 장 소		
위와	같이 검수하였음	
	년 월 일	
검	수 자 소속 직 성 명	1
입	회 자 소속 직 성 명	1

(주) 두 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.

(추 6) - 3076 -

## [별지 제29호 서식 뒷면]

# 물 품 검 수 내 역 서

苦	명	규	격	단	위	단	가	계약 <sup>/</sup> 수	전 회 까 지 의 납품수량	금 회 검수량	미납량	확인인

# [별지 제30호 서식]

# 준 공 검 사 조 서

공 시	- 명											
도 급	· 자											
계약국	금액											
계	약		년	월	일	준공	기한		년	월	일	
착	구ㅇ		년	월	일	준	구		년	월	일	
준공)	검사		년	월	일							
비	고											
별지	설계시	서 및 도	<u>-</u> 면이	∥ फ्र	라 위5	와 같이	준공검	사를	필하	겼음		자산취득 조서작성
					년	월	Ò	]				
	검사 원				직	성명 성명	<b>(1)</b>					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

## [별지 제31호 서식] 〈개정 2015·2·2〉

# 지 출 결 의 서

증제	호											
담당자	팀	장	기업출납	원 관i	리자		O O 시	년 도    업특별회기	레	취급자	지	출원
								출 과 목	,			
발의				<b>(1)</b>	₹	4		발으	]			<b>(1)</b>
계약				<b>(1)</b>		.1		<b>ーーーー</b>	וגו			
원인행위액등	들기			<b>(1)</b>	ŏ	5		지출여 통제원장				<u>(1)</u>
검수				<u>୧</u> )	세	항		자 금 >	리 추			
지출예산통 원장채무확 액 등			세세항 기출부 등기								•	<u>(1)</u>
기 o 채무확정 !										제	호	
원가분개정 등 기				오								
	계			-	금			원				
공급	급가	백			금			원				
 부가	가치	세										
 기타					금			 원				
적 요												
채 권 자		주 상	소: 호:				성	명 :				
			기 금액을	영수학	 참			27 2	ア	H래은행계2	<u></u> 좌번호	
영 주		_	년	월 성		,	일	계좌 입금				
주 관	부			위 금역	백을	채권			})하시기	바랍니다		
추산핕	1					이천	년 시 O C	월 일 )특별회계	지출원			
		_			_							
					명		세 서					
금 약	벅						적	요				

# [별지 제32호 서식] 〈개정 2015·2·2〉

# 급 여 지 출 결 의 서

	증제	ই													
담	당자	팀	장	기업출	납원	관리	자		년 ) O사업특	도 병하게	취	급자		지출	출원
									세출과						
	발의					<u>୧</u> )		관		발의	1				<u>(1)</u>
원인	]행위역	백등기				<b>(1)</b>		항		지출 <sup>6</sup> 통제원장	•	7]			<b>(1)</b>
채무	-확정의	백 등기					<i>ک</i>	네항		7) 7	- -) さ				
-11	1 ㅁ 치 ㅋ	ן דו				<b>(1)</b>	세	세항		자 금 <sup>&gt;</sup> 기출부					<u>(1)</u>
	무확정 보가분기							목		지급명	 병령		- n		,
7)		기					À	세목		번	호		제		호
					금				원(금		원)				
	소득	세액				주민서	]] 액			국민연금					
	의료	보험				고용토	헌험			노조비					
	상조	회비				기여는	급(징	려금)		기타금액					
										공제액계					
										현금지급역	버				
ヹ	]	3			년	월	분	봉급		봉급대정 출 근 부 위 임 정	나 대조	즈필			
차	H 권 ス	1													
<b>6</b>	] =	2	상7	기 금액	을 영	수함	Ļ	<u> </u>	월	은행명 : 일 명					
ž	주 관	부			위	금액-	을 🧦	 채권자		・송금)하시	7] 1		十.		
	추산	필						이천시	년 월   O O 특 별	일 회계 지출 <sup>9</sup>	원				

					-	공제액					
번호	성명	급호봉	봉급액	소득세	주민세	기여 금	의료 보험	소득액	수령인	인	비고

# [별지 제33호 서식] 〈개정 2015·2·2〉

## 구입(물품ㆍ기타) 지 출 결 의 서

증제	호										
담당자	팀	장	기업출납 원	관리	자	○○사업	년 도 특별회계	추	급자	지를	출원
						세 출	과 목				
발의				<b>(1)</b>	관		발의				<u>(1)</u>
원인행위역	백등기			<b>(1)</b>	<u>"</u>						
주문				<b>(1)</b>	항		지출예산 통제원장 등				<b>(1)</b>
납품				<b>(1)</b>				) /			
 검수	:			<u>(1)</u>	세항		자 금 지 章 기출부 등				<b>(1)</b>
물품출납투	- - 등기			<u>(1)</u>	세세형	]-	기울구 중/	<u> </u>			
채무확정의							지급명령 번 호		제	Ž.	-
재고분기				<u>କ</u>	목						
또는 채두 재구분기					세목		적 요				
	계			금		원	( 원	1)			
경	'급가의	}		금			원				
부.	가가치.	세		금			원				
	타수수.	豆		금			원				
			본 계약	:에 있		면 기재사항 월 일	을 승락함				
주 소:					_						
거래처					<u>ک</u>	] 명		<u>୍</u>			
위금액을				성명	<b>(1)</b>		는 영수함 년	월	일 성명	3 (	<u>)</u>
송금	거리	내금원	<b>우</b> 기관	7	계좌번.	호 	성 명			<u>୧</u> )	
주 관	<u></u> 부		위	금액	을 채권		급·송금)하시기	기바	랍니다.		
추신	필				이친	년 월 년시 00특	별회계 지출원				
					물 품	명 세 서					

# [별지 제34호 서식] 〈개정 2015·2·2〉

# 여 비 지 출 결 의 서

증제 .	호												
담당자	팀 장	기업	출납원	관리	의 <b>자</b>			년	도		취급자	지	출원
							○○사약 세 출						
발의		•		<b>(1)</b>		관			발	의			<b>(1)</b>
원인행위액	등기			<b>(1)</b>		항			지출	예상			
						세항			통제원			•	<b>(1)</b>
채무확정액									자 금 기출부				<b>(1)</b>
채무확정 원가분개 <sup>2</sup>			목지급명령							a)		<u> </u>	
	개상 기 세목 번 호									제	3	Σ	
	ŧ	₩					(급			)			
					청구	가 성명	}	<b>(1)</b>		위 금액-	을 년 6	월	일
년 월	일			거래 계좌	은행 번호					영수하였		ㄹ	근
근무처						봉급 급	글 호		영수지	-서명		<u>୍</u> ପ	
L   //						급여	원		017	0 0			
주 관	부			위	금액	을 채권	자에게(지급			기 바랍니	다.		
추산필						이천	년 월  시 〇〇특별			<u>[</u>			

	여비지급명세서																		
여행자 월 일 출장지							운	운 임			식	റി	人	7]		수	여스이		
소	직	성	출장	출장	출	경	도	목	종별	거	요	일/	7	일	숙 박	/	   계	ㅜ 령	영수인 (청구액외
속	급	명	시작	종료	발	유	착	적					刊	刊	료	타	,		는 포기함)

## [별지 제35호 서식] 〈개정 2015·2·2〉

## (공사·용역)집행과 지출결의서

증제	호												
담당자	팀	장	기업출납	·원 관	리자		ㅇㅇ사	년 5 업특별3		취	급자	지·	출원
								를 과 들					
발의				<u>(1)</u>	. 관	-			발의				<b>(1)</b>
계약	:			<b>(1)</b>	-1				지출예산				
원인행위역	백등기			<b>(1)</b>	항	-			기월 개년 기원장 등	기	•		<b>(1)</b>
검수				<b>(1)</b>	세호	항		71	· 금 지 출				
지출예산 원장채무	확정				세세	항			출부 등기	- 1	•		<b>(1)</b>
, -	기 			<b>(1)</b>	목	-			지급명령		제		호
원가분기					세분	콕			번 호		ᆁ		오
	계					<u>'</u>		'	원				
	공급가액								원			_	
	アント			=					원			_	
<u> </u>	타수수회	コ 正			!				원			_	
적	요												
채 권	자		소: 호:				성 명	:					
		싱	가기 금액을	을 영수학	함			ᅰ괴	거래	은경	행계좌	번호	
경	주		년	월 성	명	,	일	계좌 입금					
주 관	가 부		9	위 금액	을 채	권자			)하시기 ㅂ	·랍	니다.		
추신	<u> </u> 필				(ه	천시	년 월 〇〇특별		지출원				

	명	세	서	
건 명			금 액	비고

#### [별지 제36호 서식] 〈개정 2015 · 2 · 2〉

#### 운 반 지 출 결 의 서

증제	호													
담당자	팀	장	기업출납	원	관리		년	도		취급자	지	출원		
								) O사업특별 세 출 과						
발의					<b>(1)</b>		관		발의	븨	•		<b>(1)</b>	
							항		지출부	기재			<b>(1)</b>	
원인행위액	등기			. 0			세항		 지급 명령					
계약					<u>(1)</u>	メ	베세항		발행부				<b>(1)</b>	
" '							목		지급명령		3			
검수							세목		번	호	제	ই		
급					(				원)					
적 :	<u>\$</u>							거래은 <sup>5</sup> 계좌번3		계좌	돈 명 : 번호 : 금 주 :			
채 권 :	자	주 상	소: 호:					성 명 :						
,		ノ	상기 금액을	. 영	수함									
영	주					년		월 성 명	일					
주 관	: 과			위급	금액을	채-	권자에게	메(지급·송	금)하시기	기바	랍니다.			
취 급	· 자					(ه		월 일 ○특별회계						

		운 반	물 품	명 세 /	서			
발송자	도착자	품명	포장종류	개수	용적중량	단가	금액	비고

#### 승낙사항

- 1.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
- 2. 천재 등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가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따라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치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에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.
- 3. 천재 등 불가항력의 원인에 따르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 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
- 4.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.

#### [별지 제37호 서식]

#### AA0001 원 부

번 호	AA0001
사업년도	년도
지급금액	원
발 행 일	년 월 일
수취인명	
적 요	

### AA0001 수 표

지급지 : 이천시 〇〇사업출납 취급금융기관

○○○은행 ○○지점

번호	AA0001
사업 년도	년도

 61/7	61.
 위(근	위 )
린(ㅁ	근/

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발행인 이천시 ㅇㅇ사업관리자 ㅇㅇㅇ ⑩

[별지 제38호 서식]

## 수 표 발 행 통 지 서

발행일자	수표번호	수표수취인	수표금액	기타 필요사항
년 월 일	AA0001			
상 동	AA0012			
합 계				

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이천시 ○○사업 관리자 ○○○ 인

이천시 ○○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○○은행 ○○지점 귀중

※ 수표원부 및 수표발행통지서 양식을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수정사용

### [별지 제39호 서식]

### 교부자금교부통지서

	과	목		<u> </u>	교 부 자 금 교 부 액						
관	헝	세항	목	기교부액	금회교부액	누	계	비고			

※ 위와 같이 자금을 귀 직 계좌에 대체 지급하였음을 통지함

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

○○○일상경비출납원 귀하

○○○분임기업출납원 귀하

## [별지 제40호 서식]

# 여 입 결 의 서

증제	호																
다다っ	담당자 팀 경		] 장		기 업		121	년세출 특별회계-			계			지 출 원			원
1 6 A	r 	日 <sup>1</sup>	ờ	출납원			년 세술			: 특별외계·							
							세	출과목									
발	의	1	년	월	일	<b>(1)</b>	관				발	의	ļ	년	월	딜	<u>(1)</u>
원인행 등	위액 기	1	년	월	일	<b>(1)</b>	ठी			통		·예산  장등기	ļ	년	월	일	<u>(1)</u>
채무확 등	·정액 기	1	년	월	일	<b>(1)</b>	세항			1	자금> 등	지출부 기	ļ	년	월	일	<b>(1)</b>
											수표번호			제		Č	2
			<u>1</u> 1				원	(금	(금 원)								
지 급	일	자		1	년 ·	월 일		고	지 소	] 발	: 행	녆	]	월	,	일	<b>(1)</b>
수 표	번	호		제		호		납	부	기	한	Ę	]	월		일	<b>(1)</b>
반 환	고 지	서		제		호		납	부	1_	일	Y	j	월	,	일	<b>(1)</b>
반	납 :	자	주	소								성명					<b>(1)</b>
주	관 지	-	반	납시	유												
추산 필 ⑩	₹ 7	+ } )															

※ (주) 주서로 인쇄

#### 「별지 제41호 서식〕

#### 반 납 고 지 서

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회계 제 호 회계 제 호 년도 년도 년도 회계 (장) (장) (장) (항) (항) (관) (관) (항) (관) (세항) (목) (세항) (목) (세항) (목) 금 원(금 원) 금 원(금 원) 금 원(금 원)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.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.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.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: 이천시○○○ 납입장소: 이천시〇〇〇 납입장소: 이천시〇〇〇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① 지출원 성명 ① 지출원 성명 ① 반납자 귀 하 지출원 귀 하 (반납자) 귀 하 반납자

### [별지 제42호 서식]

## 세외세출 외 현금(일시보관유가증권) 납부서

	제 호		년도
	세입 유	세출외현급 가 증 급	<u> </u>
		<u>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u>	<u>원</u> )
귏ᆿ	171		
<u>건</u>	]구분 명		
<u>현</u> 증	명 금 권 권		
<u>증</u> 원	<u>권 명</u> <u>]</u> 권	미	 원
_	]권 ]권		원 원
	]권		원
상기:	와 같이 남	급부함.	
	년	월	일
납부지	ト 주소 성명	Q	)
기록	취급자	출납원	기업출납원

			_
유	세출외현 가 증	년도 년금 권	
급	원(금	<u>원</u> )	ı
<u>정리구</u> .	<u> </u>		l
건 명	녕		l
	1		ı
증 7			l
<u>증 권 명</u>	<u> </u>		ı
원권	미	원	
원권	매	원	
원권	미	원	١
원권	旧	원	١
			ı
상기와	같이 납	부함.	
년	월	일	
세입세출			
	0 0 0	) (1)	
출납취급금	금융기관	귀하	

	제 호		년도							
<u>정리구</u> 건 현 증 권	<sup>1</sup> 분명 급 권 명		   							
원건 원건 원건	<u> </u>	대 대 대	원 원 원 원							
납부기	주소 성명 ]와 같이	납부함.								
	년	월	일							
납부자 주소 성명 ①										
기록	취급자	출납원	기업출납원							

<b>h</b>	세출외현 가 증 원(금	년도 금 권 원)
<u>정리구분</u> 건 명 현 급 증 권 증 권		
원권 원권 원권 원권	매 매 매 매	아닌 아닌 아닌
상기와 집		_
년	월	일
, _ ,	〇〇이시 급금융기	
(납부지	<u>.</u> })	귀하

(추 6)

## [별지 제43호 서식]

## 세입세출 외 현금(일시보관유가증권)반환청구서

제 호 년도	제 호 년도
세입세출외현금	세입세출외현금
유 가 증 권	유 가 증 권
<u>금 원(금 원)</u>	금 원(금 원)
<u>정리구분</u>	정리구분
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	<u>건 명</u> 현 금
<u> </u>	<u> </u>
증 권 명	증 권 명
원권 매 원	원권 매 원
원권 매 원	원권 매 원
원권 매 원	원권 매 원 원권 매 원
원권 매 원 계 매 원	_ 계 대 원
상기와 같이 납부함.	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
년 월 일	년 월 일
청구자 주소	게이게호이뤄그호나이
성명 ① 기의 기의 기의	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○ ○ ○ ②
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	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
	상기와 같이 영수함
기록 취급자 출납원 기업출납원	년 월 일
	영수자 주소
	성명
	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

[별지 제44호 서식]

##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

총 별	현 금	예 금	계	비고

※ (주)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.

(추 6) - 3092 -

## [별지 제45호 서식]

# 인 감 신 고 서

년 월 일부터 사용

서 명	인 감								
※서·기명(서명판 사용할 때는 날인)	직 인								
	인 감								
본인이 사용할 직인, 인감,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.									
	년 월 일								
이천시 〇 〇 /	나업특별회계 								
직·성명	(본인자필날인)								
귀하									

[별지 제46호 서식]

## 세 입 세 출 원 장

(출납취급금융기관용)

	よ		입	자금교부액			세	추 ː		잔 액	자	금	운 용	
년월일	수 입	과오납 반환액	차 감 (1)	(2)	수 표 발행액	지급액	반납액	과 목 경정액	차 액 (3)	(1)-(2)-(3) =(4)	예금등 (5)	환 입 (6)	공금잔액 (4)-(5)+(6)	비고
														<ul><li>※예금 등 :</li><li>대출,</li><li>정기예금 통지</li><li>예금</li></ul>

## [별지 제47호 서식]

# 수 입 지 출 원 장

(출납대행점용)

		수 입			지 출		. 잔 액		
년월일	수입액	반납액	차감액 (1)	지출액	반환액	차감액 (2)	(1)-(2)	비고	-

# [별지 제48호 서식]

# 세 입 금 내 역 장

년월일	적 요	증서번호	납입자성명	금 액	누 계

[별지 제49호 서식] 〈개정 2015·2·2〉

## 세 출 금 내 역 장

년월일	적요	수표및지급 통지번호	채권자	직접 지급	송금	집합 송금	소계	자금 배정	합계

[별지 제50호 서식]

#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장

년월일	적 요	납입자 성 명	수 입	지 급	잔 액

# 자 금 운 용 내 역 장

년월일	적	요		지	불			환	입		잔 액
건설된    -	Ή	ν.	정기예금	통지예금	대출동	계(1)	정기예금	통지예금	대출동	계(2)	(1)-(2)

###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

[별지 제52호 서식] 〈개정 2015·2·2〉

### 지 급 완 료 통 지 서

증제 호				
이천시 ○ ○ ○특별회계	년도	월 일분		
수표 또는 지급의뢰서번호	채권자	건 수	금 액	비고
합 계				

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

년 월 일

이천시 ㅇㅇㅇ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

기업출납원 귀하

(추 6) - 3100 -

## 세 입 세 출 일 계 표

			세	이		자 금	수 표		세	출		잔 액	자	금 성	9 9	
구분	일 계누계	수입액	과오납 반환액	과 목 경정액	차감 잔액 (1)	교부액 (2)	발행액	수입액	과오납 반환액	과 목 경정액	차감 차액 (1)	(1)-(2) - (3)=(4)	예금 등 (5)	환 입 (6)	공금잔액 (4)(5)(6)	비고
	일 계															
	누 계															
	일 계															
	누 계															
	일 계															
	누 계															

위와 같이 보고함.

년 월 일

이천시 ㅇㅇㅇ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⑩

기업출납원 귀하

[별지 제54호 서식]

## 세입세출 외 현금(유가증권)일계표

구	브	전일잔액	금일	입금	금일	지급	금일잔액	내 역	
-1	正	신 글 신 박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ㅁ 뒫센 띡	ਸ ਜ	
합	계								
부	7]	금 일	잔액	정기예금		현금잔액			
T	/								

위와 같이 보고함.

년 월 일

기업출납원 귀하

(추 6) - 3102 -

## [별지 제55호 서식]

# 출 고 청 구 서

		원 구				월			담당	자	분출	임자 납	산 원	과	장		아 선 답답	<u></u> 원		] 업 납원
하기	재그	고자신	<u>}</u> 을 칕	출고하	<b>}</b> 여 <sup>2</sup>	주시기	바랍니	니다.	<u> </u>											
공	,	사	명					þ	∥산 ፲	가 목 	1	관		ठॅ	}		세 항		Ē	곡
공시	ŀ결: 	재년 <sup>.</sup>	월일										결재	번.	<u>ই</u>					
품	명	규	격	단	위	수	량	- 단	가			1. 1	액		사업	별	배	수지	}-	비고
											_									

분임자산출납원 직 성명 ①

### [별지 제56호 서식]

## 발 생 품 평 가 조 서

발전	생장소	: 및	공사	-명						Ę.	남당자		자 출납		기 출납		관리	기자
											년		월		일			
품	명	규	겨	단	ଠା	수	랴		평	가			Ž	별	정		別	고
古	-7 <b>3</b>	11	~i	긴	TI	T	70	1차	2	차	3차	フ	]준액		입고전	丑	₽ļ	44

 조서작성자 1차
 직
 성명
 ①

 2차
 직
 성명
 ②

3차 직 성명 ①

## [별지 제57호 서식]

## 재 고 조 사 표

재고조사일: 년 월 일

ਕ ਸ	- 기 - 구-l	rl. ól		수 량		ul ¬
품 명	가 격	단 위	장부잔량	실재량	증 감	비 고

재 그	고 조	사 자	직	성 명	<b>(1)</b>
과		장	즤	성 명	<u>(1)</u>
입	회	자	즤	성 명	(0)

- 3105 - (추 6)

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

「별지 제58호 서식〕

#### 재고자산손실(잃어버림・훼손)보고서

- 1. 관계직원의 직 성명
- 2.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( 년 월)
- 3. 잃어버림, 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(잃어버림, 훼손 등의 일시, 장소, 원인,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)
- 4. 잃어버림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
- 5. 평소의 관리상황
- 6. 조치상황
- 7. 첨부서류
  - 가. 잃어버림,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, 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
  - 나. 그 밖의 참고사항

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

년 월 일 자산출납원 **①** 

(추 6) - 3106 -

# 건 설 가 계 정 정 산 부

<u>공사명</u> 공 사 :	또는 소 재	· 번:	<u>ਨ</u> ੋ			지출	예산괴 착·	-목 공일	감사							지	급 자	재		축	구	춬	고				
공사주: 시 공	관부시	너						공일							구분	품명	규격	단위	수량	1 / -	차)		차)	비		ڌ	1
	도 ;	급 1	a) .	내	역			7	세 정	] Н	] 내	역															
연월일	적	요	=	구액		비고	연월	일	적.	요	금	핵	비	고													
															-1)												_
															계												
			고	ろ	] ] z	· 산	대	체	내	역								<u> </u> 반		 납		품					_
자 산	 다 9	위			) /	"		· ·		취	득	 원	<u></u> 가	관							 차			2	 차		_
			단	수	용	구조 규겨	능력 형식 종류	회	조 사명 월일	자	도	제		리	품	규	단	수				-7				_	비
분류 지기호 번	사산 번호	명칭	위	량	도	규격 용량	종류	연 ]	월일 NO	재 비	급 비	정 비	계	부 서	명	격	위	량	NO	수 량	단 가	금 액	NO	수 량	단 가	금 액	고

[별지 제60호 서식]

### 품의 고정자산전용신청서

경 유: 자산운영책임자

년 월 일

수 신:기업출납원

전용신청부서

분임자산출납원 ①

		1															
현관리.	부서												전용부서				
설치경	장 소												설치장소				
자	· 산 당	<u> </u>	위	구조규격 단 위 수 량									ə] () ə] ə]	자	년	월	일
분류기호	자산평	가	명	칭	十全十年	ぜ	Ħ	丁	당	단 가		금 액	전용기간	자	년	월	일
													전용사유・	기타			
운영부서	책임자 :	또는	자산출	출납	원의견												

담 당 자 자산출납원 기업출납원 관 리 자 전용 승인코자 합니다.

(추 6)

## 고정자산전용지시서

<u>지</u>	시	No.			_		
		ĭ	가장 9	<u>)</u> -			
	아	래와	같이	전용	지시하니	인수인도할	것.

담 당 자	자산 출납원	기업 출납원

년 월 일

기업출납원

**(1)** 

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					전 용	용 처				
					용	도				
					०]	유				
					전 기	용 간	자 자	년 년	월 월	일 일
					운반	방법				
					운반 개 선					
					전용지	시기한		년	월	일
					첨	부				

[별지 제62호 서식]

#### 고 정 자 산 평 가 조 서

경유: 자산운영책임자 고정자산운영책임자 ①

수신:기업출납원 과장 인

단 위 자 산												업무담당팀	00		회계	ᅯ리
분류기호	자산번호	명	칭	단	위	수	량	발생일자	발	생 원	! 인	평 가	자산출 평	납원 가	관	지디   계
부 서						평		가 자				확	인	자		
업무담당팀					직			성명		<u>(1)</u>	담	당 자				<b>(1)</b>
0 0 과					직			성명		<u>(1)</u>	자	산출납원				<b>(1)</b>

※ 평가란은 재용・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-1, N-2, N-3, N-4, N-5로 기입 재용・불용기준은 50%를 기준으로 한다.

첨부: 고정자산대장 매

(추 6) - 3110 -

[별지 제63호 서식]

## 고정자산 실제 조사 보고서

기업출납원 귀하											담	담 당 자		자 / 출납:			업 갑원
조사연																	
자산분류 전 년 도 말 현 재										당	기 증	감					
							증 가					감 소				연도말	
계 정 명		명	구조 및	단	수	금	구조	단	수	금	구조	단	수	금		사일) 대액	사유
분류기호	번호	칭	규격	가	량	량 액				규격	가	량	액				

년 월 일

과장 ①

(추 6) 3108~3134